

○ 解説 ○

Laurant Crémazy와 大韓刑法

「大韓刑法典」은 大韓帝國의 法部 法律顧問 Laurant Crémazy가 光武 9年 4月 29日(陽 5月 29日) 法律 第3號로 公布된 「刑法大全」의 佛譯名 Le Code Pénal de la Corée의 副題로 表示된 名稱이다.

「刑法大全」을 翻譯한 Crémazy는 佛國法曹人으로 佛領 Madagascar島의 屬島인 Reunion島에서 1837年 8月 11日 誕生한 佛國人으로 佛本國에서 法學을 專攻하고 1872年 4月 本國 Pondicéry 法院에서 判事로, 1875年 6月에는 Cayenne 法院에서 判事로 在職하다가 1876年 2月 Fort-de-France 法院의 法院長이 되었으며, 1879年 12月에는 다시 佛領 Reunion에 돌아가 同島의 島廳에서 法律顧問 일을 맡고있다가 1896年 佛領印度支那總督 Paul Doumer의 招聘에 의하여 西貢高等法院長에 就任하고 있다가, 1900年 退職하고 巴里高等法院 辯護士의 資格을 가지고 同年(光武 2年) 5月 大韓帝國政府의 招聘으로 法部顧問 겸 法律敎師로 傭聘되었으며 韓國名을 金 雅始라고 稱하였다. 1901年(光武 3年) 5月 法部大臣 俞 箕煥의 命令으로 當時 刑法校正官들이 起草中인 改正刑法의 草案作成에 參與하게 된 것이다. 起草作業이란 것은 大明律, 經國大典以下 大典會通까지의 各法典中에서 刑事法規定을 모아 國文을 섞어서 條文化하고 이를 分類하여 新法典을 만드는 일이었으며 이 作業은 거의 完成段階에 있었던 것이다. Crémazy는 이 草案의 說明을 起草者들로 부터 들으면서 같이 檢討한 것은 틀림없으나 固有法尊重思想에 立脚하여 그 自身の 指示로 添削 또는 增補시킨 것은 없는 듯하다. 그 約一年에 걸쳐서 이미 成案된 草案을 字句 修正程度로 하여 總 672條의 改正刑法草案을 1902年 5月에 議政府에 올렸던 것이다. 議政府에 올리면서 그는 同草案에 대한 意見書라고 볼 수 있는 8個條의 Réformes pénales proposées au Grand Conseil Coréen(議政府에 提案한 改正刑法)을 보던 這問의 事情이 짐작된다.

本誌上에 掲載하는 Crémazy의 「大韓刑法典」은 議政府에 上呈된 改正刑法의 草案이다. 同草案은 議政府에서 若干 條項이 修正 또는 添加되어 總 680條

로 1905年 4月 29일에 비로소 公布되고 法典의 名稱은 「刑法大全」이라고 불렀다.

Crémazy는 1904년에 改正刑法의 草案 672條를 佛譯하고 이에 前示 意見書 및 索引을 添加하고 序文을 附하여 「大韓刑法」의 이름으로 서울서 出版한 것이다. 本書의 內容은 (1) 大韓刑法의 翻譯과 分析, (2) 中國刑法(大清律)과 安南刑法에서의 引用法條文의 指摘, (3) 大韓政府의 諸制度와 慣習의 解說, (4) 議政府에 提議한 改正刑法에 대한 報告, (5) 索引을 包含한다고 附記하고 있다.

Crémazy는 大韓刑法이 「刑法大全」의 이름으로 公布된 直後에 그의 傭聘契約는 解約되어 巴里로 歸國하였으며 歸國後에 다시 公布된 刑法大典 680條와 그가 翻譯한 刑法草案과 比較하여 條文의 異動을 밝히고 新條文을 翻譯하여 「大韓刑法補正版」(Texte complémentaire du Code Pénal de la Corée)를 1906年 巴里에서 出版한 것도 이번 같이 掲載한다.*

Crémazy의 歸國後의 경력이나 그의 死亡日時에 關하여서는 아직 더 調査할 必要가 있다. [田 鳳德]

* 여기에 收錄하는 Le Code Pénal de la Corée의 原本은 西獨 Berlin의 Proußische Staatsbibliothek에 所藏된, Crémazy가 당시 駐韓獨逸公使 Saldern에게 借증한 책을 崔 鍾庫박사가 복사해 온 것을 再復寫한 것이며, 뒤의 Text Complémentaire du Code Pénal de la Corée의 原本은 「韓國教會史研究所」에 所藏된, Crémazy가 Mutel大主教에게 借증한 책으로 복사한 것이다. 同 研究所 所長 崔 奭祐神父에 감사하는 바이다.